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38호
2.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외 14명
3. 발의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0. 20.

II.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별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학교 부설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운동장 일부 및 공터를 활용하거나 사립학교는 부지를 공유하는 같은 재단의 학교와 주차장을 공동사용하고 있음.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한다고 하나, 학교 자체 여건에 따라 임의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교 내 교육 공간 확보,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학교 주차장”, “안전설비” 등 조례에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3.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4.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5.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를 규정함(안 제5조)
6.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7. 학교 주차장 설치 또는 확장·이전 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8. 학교 주차장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함(안 제9조)
9.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개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안 제11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윤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838호로 발의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보와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 동 조례안은 지난 회기 교통위원회 사전의결 미비를 이유로 미상정되었던 의안이 사전절차 완료로 상정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주차장법」 제2조제1호1)에 따르면 학교 주차장은 주차장 종류 중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며,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현재 「주차장법」 2) 및 「주차장법 시행령」 3)에 위임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해 설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주차장법」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치·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설치제한 지역 및 기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⁵⁾을 제정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도서관)⁶⁾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운영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그 결과 학교주차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⁷⁾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총 1,156개교⁸⁾ 중 81개교(7.0%)에 불과하며 93%(1,075개교)의 학교가 법적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⁹⁾.
-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의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교육청의 관리영역 밖에 있던 학교 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표-1] 학교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 여부

4) [붙임1] 자료 참조.

5) 2014년 12월 19일,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함.

6) [붙임2] 자료 참조.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붙임3] 참조)에 따라 학교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00㎡ 당 1대 임.

8) 총 1,301개교 중 중·고등학교 등이 공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학교는 1개 학교로 간주함.

9) 학교주차장의 경우 200㎡ 당 1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음. 예컨대 시 설면적이 8,825㎡ 인 A학교의 경우 설치 기준 200㎡ 당 1대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주차대수가 44대여야 하나 현재 A학교의 주차대수는 39대인바, 5대의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설치기준 준수 여부 | 학교수(%) |
|------------|---------------|
| 준수 | 81(7.0%) |
| 미준수 | 1,075(93.0%) |
| 전체 | 1,156(100.0%) |

[표-2] 학교급별 학교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단위: 학교수, %)

| 학교급별 | 준수 | 미준수 | 전체 |
|------|----------|------------|-------------|
| 초등학교 | 48(8.3%) | 527(91.7%) | 575(100.0%) |
| 중학교 | 13(4.4%) | 284(95.6%) | 297(100.0%) |
| 고등학교 | 20(7.0%) | 264(93.0%) | 284(100.0%)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학교 주차장의 설치 한도, 실태조사, 관리계획, 안전확보, 사용료 징수, 개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바, 조례 체계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동 조례안 제7조는 학교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매 5년마다 학교 주차장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

례」 제8조에 따라 정책·안전기획관이 학교시설 및 학교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에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은 주로 학생들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인데 반해,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은 학생의 안전 관리 이외에도 주차장 실태조사나 주차장 설치 한도, 주차장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안과 같이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이전에 대한 검토(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이전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 사항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학교장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 주차장의 현황, 설치한도,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같은 조 제1항의 ‘협의’는 제3항과 같이 ‘승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감과 협

의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4) 학교 주차장의 설치·이전 시의 이동 동선 고려 및 안전 확보에 대한 검토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

○ 안 제8조제2항은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이전시 학교장이 학생 및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8조제2항에서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 를 ‘교육활동 및 학생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 배치’ 를 ‘등·하교시 안전요원 배치’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 그러나 현재 학교 주차장은 등·하교 시 교직원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학부모나 민원인의 방문도 있으며, 동 조례안 제 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과 후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방문까지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및 보행자를 고려하고 이들을 위한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학교보안관¹⁰⁾ 및 배움터지킴이¹¹⁾ 등 학생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교내 CCTV 교체 설치 등¹²⁾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596개교 및 특수학교 32개교에 총 1,260명 배치

11)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 다만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교육활동시간에 근무하는 만큼 안 제11조에 따라 방과 후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주차장(시립학교에 한정)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급지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이 월단위로 주차하는 정기 주차의 경우 6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학교 주차장(시립학교) 이용시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동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의 경우 민원인 방문이 적어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차장 무료 사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

| 구분 | 학교급 | 초 | 중 | | | | 고 | | | | 계 | | | |
|--------|-----|----|----|-----|-----|-----|----|-----|-----|-----|----|-----|-----|-----|
| | 설립별 | 사립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 학교수(교) | | 38 | 2 | 275 | 107 | 384 | 3 | 124 | 172 | 299 | 5 | 399 | 317 | 721 |
| 인원수 | | 76 | 2 | 386 | 115 | 503 | 3 | 168 | 195 | 366 | 5 | 554 | 386 | 945 |

1.10.29.).

- 그러나 동 조례안 제10조는 교육감이 학교 주차장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요금, 사용료 부여 대상 및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등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현행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는 학교 주차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¹³⁾,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한 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학교 주차장의 개방에 대한 검토(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거나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개방 조례’)」에 따라 학교 교육 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에서 주차장(지하주차장 제외)을 개방하는 학교는 132개 교에 불과한 바,¹⁴⁾ 동 조례안에서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및 지

13)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설주차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14) 2019년 기준(코로나19 이전)

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안 제11조에서 개방대상으로 규정한 주차장의 경우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사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규정에서 ‘교육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경우 동 규정이 「시설개방 조례」와 중복되고, 사립학교의 경우 상기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이 경우 해당 급지 요금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4. 삭제 <2020.7.16>
5. 삭제 <2020.7.16>[본조신설 2017.3.23]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붙임2]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학교 주차장 제외) 운영 현황

(2021. 8. 기준)

| 연번 | 기관명 | | 주차요금 | | 비고 |
|----|----------|-----------|---------|--------|-----------------------|
| | | | 무료시간 | 5분당 요금 | |
| 1 | 본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30분 | 250 | 녹색교통지역 |
| 2 | 직속 | 과학전시관 | 60분 | 150 | |
| 3 | | 교육시설관리본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부설주차장 제외 |
| 4 | | 교육연구정보원 | 10분 | 150 | 서울시(중부푸른농지사업소)주차장 운영 |
| 5 | | 교육연수원 | 60분 | 150 | |
| 6 | | 유아교육진흥원 | 무료 | 무료 | 녹색교통지역 |
| 7 | | 학생교육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부설주차장 제외 |
| 8 | | 학생체육관 | 30분 | 300 | |
| 9 | | 평생학습관 | 고덕평생학습관 | 60분 | 100 |
| 10 | 노원평생학습관 | | 60분 | 200 | |
| 11 | 마포평생학습관 | | 60분 | 250 | |
| 12 | 영등포평생학습관 | | 60분 | 150 | |
| 13 | 도서관 | 강동도서관 | 60분 | 150 | |
| 14 | | 강서도서관 | 60분 | 100 | |
| 15 | | 강남도서관 | 30분 | 200 | |
| 16 | | 개포도서관 | 60분 | 150 | |
| 17 | | 고척도서관 | 무료 | 무료 | |
| 18 | | 구로도서관 | 60분 | 120 | |
| 19 | | 남산도서관 | 60분 | 150 | |
| 20 | | 도봉도서관 | 60분 | 190 | |
| 21 | | 동대문도서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부설주차장 제외 |
| 22 | | 동작도서관 | 60분 | 300 | |
| 23 | | 서대문도서관 | 60분 | 120 | |
| 24 | | 송파도서관 | 60분 | 290 | |
| 25 | | 양천도서관 | 60분 | 150 | |
| 26 | | 어린이도서관 | 60분 | 200 | 녹색교통지역 |
| 27 | | 용산도서관 | 60분 | 130 | |
| 28 | | 정독도서관 | 10분 | 190 | 녹색교통지역 |
| 29 | | 종로도서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부설주차장 제외 |
| 30 | 교육지원청 | 동부교육지원청 | 60분 | 120 | |
| 31 | | 서부교육지원청 | 무료 | 무료 | |
| 32 | | 남부교육지원청 | 60분 | 300 | |
| 33 | | 북부교육지원청 | 30분 | 200 | |
| 34 | | 중부교육지원청 | 30분 | 400 | |
| 35 |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무료 | 무료 | |
| 36 |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무료 | 무료 | |
| 37 |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30분 | 200 | |
| 38 |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무료 | 무료 | 정기주차 요금 징수 |
| 39 |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30분 | 250 | 서울시(성동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
| 40 |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30분 | 200 | |

[붙임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 학교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중 ‘10. 그 밖에 건축물(○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에 해당함¹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시설물 | 설치기준 |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
| 2-1.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5) [별표2] 비고>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붙임4 참조)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10.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된 학교의 경우 등 조례의 시설물 종류에서 ‘10.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시설물 | 설치기준 |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m ² 당 1대 |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267m ² 당 1대 |
| 9.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m ² 당 1대 |
| 10. 그 밖의 건축물 |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m ² 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

[붙임4]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교육연구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붙임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종류 및 종류별 설치기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 시 설 물 | 최고한도 |
|--|--|
| 1.위락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22㎡당 1대 |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시설면적 200㎡당 1대 |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68㎡당 1대 |
|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
|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466㎡당 1대 |
| 7. 창고시설 | 시설면적 534㎡당 1대 |
| 8.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400㎡당 1대 |